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2044 등록면허세(등록) 일반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등록면허세(등록) 일반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59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등록면허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800원 중 1,7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60원 중 1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등록) 일반무신고가산세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불성실가산세 1,800원의,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 절연체 전이 소자의 개발 ·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4.경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0. 전자접수의 형태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면서 등록사유를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그 밖의 등기'로 신고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라 한다), 그에 따라 산출된 등록면허세 40,200원 및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 중 '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보통주식 300,000주' 및 '자본금의 액 1,500,000,000원' 항목을, '발행주식 총수 600,000주, 보통주식 600,000주' 및 '자본금의 액 3,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변경등기는 같은 날인 2015. 4. 20.자로 마쳐졌다.

라.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4. 21. 청주지방법원 등기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변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이 아닌 같은 호 가. 목의 2)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전자접수의 형태로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하면서 등록사유를 '영리법인 출자 및 자본증가'로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라 한다) 그에 의하여 산출된 등록면허세 6,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제1차 신고에 따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환급을 청구하여 2015. 6. 18. 피고로부터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140원 합계 48,380원을 환급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등록면허세 일반무신고가산세 1,200,000원, 등록면허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80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원 합계 1,202,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등기가 무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세율을 적용할 때 '그 밖의 등기' 항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제1차 신고를 하였던바, 일단 원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제1차 신고를 함으로써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상,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음'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이 될 수는 없다. 나아가 무신고가산세가 감액되는 이상 위 가산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신고(無申告)인지 과소신고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록기한 내인 2017. 4. 20. 이 사건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를 적용하여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000분의 4'로 정해져 있는 반면, '그 밖의 등기'에 대하여는 '건당 40,2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 신고 시 법인등기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세율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변경등기'라는 동일한 과세단위에 관한 것으로서 단지 세율항목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밖의 등기'로 등록면허세의 과세가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 위와 같이 유효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등기 신청 후에 비로소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세 등을 신고 · 납부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913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 등이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 등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등록면허세를 산정할 때 어떠한 세율항목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는 수정신고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율항목이 서로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과세신고대상으로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는 세율항목을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액수보다 세액이 적게 산출된 이 사건 제1차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올바른 세율항목을 적용한 이 사건 제2차 신고로써 사실상 위 규정에서 정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이 사건을 구성할 여지도 있다.

다) 나아가, ① 원고가 2017. 4. 20. 전후로 한 등기의 변경은 이 사건 변경등기뿐인 점, ② 세액의 계산은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경등기는 무상증자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인 원고 입장에서 그 주장과 같이 '자본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변경등기 직후인 다음날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탈세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1]라고 보기도 어렵다.

---

1)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2018. 2.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차 신고를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세액 탈루 방지를 들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라) 무신고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인 반면에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유효한 점이나 원고가 그 다음날 바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한 점 등 위 다)항에 기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를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세율항목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에 보다 부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違法)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다음 위 무신고가산세를 근거로 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신고가 이 사건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① 과소신고가산세액 : 595,980원

{과소신고분 5,959,800원(6,000,000원 - 40,200원) × 0.1}

②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1,787원

(과소신고분 5,959,800원 × 1일 × 0.00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178원

(과소신고가산세액 595,980원 × 1일 × 0.0003)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우정

판사 김주식

판사 이정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 2천 5백 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 2백 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 2백 원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5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끝.